

파트 B 절차 상 안전 장치에 대한 통지문 공립 학교 특수 교육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권리

본 문서의 내용은 주법 및 연방법에 따라 3 세부터 21 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부여되는 특수 교육에 대한 권리와 절차 상 안전 장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및 안내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본 문서는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교육법), 34 C.F.R 파트 300 의 시행 규정, 해당 미네소타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라 부모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절차 상 안전 장치 중 일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권리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나 설명은 아닙니다. 본 통지는 귀하의 구체적인 법적 상황과 관련해 정식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 문서는 해당 주 및 연방법 전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취지로 하지 않으며, 해당 법은 본 문서 발행 이후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소개

본 문서에는 때때로 절차 상 안전 장치라고도 불리는 특수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상 안전 장치는 18 세에 도달한 장애 학생도 이용 가능합니다.

본 절차 상 안전 장치에 관한 통지문은 반드시 최소 연 1 회 이상 학부모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통지문이 전달됩니다.

1. 자녀가 처음으로 특수 교육 평가 의뢰 대상이 되었거나 학부모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학부모가 처음으로 학년도 중 MDE(미네소타 주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3. 학부모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학년도 중 처음으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4.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규율 규정 위반으로 자녀를 해당 학교에서 퇴학시킴으로써 자녀의 학교 배정 상태 변경을 결정하는 당일
5.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사전 서면 통지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개시 또는 변경을 제안할 때, 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개시 또는 변경을 거부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녀의 신원 확인
- 자녀에 대한 평가 및 교육 배정

- 자녀에 대한 **FAPE**(적절한 무상 공교육)의 제공
- 학부모가 자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철회하고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에 대한 설명
2.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당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한 이유 설명
3. 해당 제안 또는 거부 결정의 근거로 사용된 평가 절차, 심사, 기록 또는 보고서 각각에 대한 설명
4.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로서 본 절차 상 안전 장치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는 설명 및 그러한 절차 상 안전 장치를 설명하는 소책자 사본을 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
5. 절차 상 안전 장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연락처 정보
6. IEP 팀이 고려한 기타 옵션들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옵션들이 거부된 이유에 대한 설명
7.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제안 또는 거부와 관련한 기타 요인에 대한 설명

연방 요건 외에, 사전 서면 통지서에는, *자녀를 최초로 특수 교육에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사전 서면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귀하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반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의 배정 제안 또는 특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실시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IEP의 내용을 개시 또는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항상 제안된 IEP의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 서면 통지서에는, 귀하가 해당 사전 서면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반드시 조정 회의(**conciliation conference**)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미네소타 주법(**Minnesota Statutes**) 섹션 **125A.091** 서브디비전 **7-9**에 따라 반드시 중재 및 원활화 IEP 팀 회의를 포함해 다른 대안적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세 정보

학부모의 절차 상 권리나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특수 교육 담당관(**Special Education Director**) 또는 아래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본 통지서는 반드시 귀하의 모국어 또는 귀하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이 서면 언어가 아닌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본 통지서 내용을 구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하가 본 통지서 내용을 이해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본 통지서는

귀하가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되었고 귀하가 본 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서면 증빙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단체 중 한 곳으로 문의하십시오.

ARC Minnesota(발달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

www.thearcofminnesota.org

651-523-0823

1-800-582-5256

Minnesota Association for Children's Mental Health(미네소타 아동정신건강협회)

www.macmh.org

651-644-7333

1-800-528-4511

Minnesota Disability Law Center(미네소타 장애법센터)

www.mndlc.org

612-334-5970(트윈 시티즈 메트로)

1-800-292-4150(광역 미네소타)

612-332-4668(TTY)

PACER(Parent Advocacy Coalition for Educational Rights: 교육 권리 옹호를 위한 학부모 연합)

www.pacer.org

952-838-9000

1-800-53-PACER,

952-838-0190(TTY)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미네소타 교육부)

www.education.state.mn.us

651-582-8689

651-582-8201(TTY)

전자 우편(이메일)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에서 이메일을 통해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 서면 통지서, 절차 상 안전 장치 통지서, 또는 적법 절차 이의 신청과 관련한 각종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겠다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 동의

동의를 정의

동의를 한다는 것은 귀하가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대상 활동의 모든 관련 정보를 귀하의 모국어로,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빠짐없이 전달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동의를 성립하려면, 귀하는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구하는 대상 활동의 실시에 대해 이해하고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동의서에는 반드시 일체의 공개 대상 기록과 그러한 기록 공개의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의를 철회

동의를 자발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철회는 소급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동의를 취소한다고 해서 동의 의사를 밝힌 이후와 동의를 철회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행위가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A. 최초 평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초 평가는 귀하 자신이나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최초 평가의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동의 거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초 평가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당 평가 실시에 대한 귀하의 허락을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0 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단, 조정 회의나 심의 요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가 최초 평가에 대한 동의 요청에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아동 파악(child find) 의무 또는 평가 및 재평가 실시 의무 이행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최초 평가에 동의하는 경우, 그러한 동의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B. 최초 배정과 특수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를 특수 교육 프로그램에 최초 배정할 때나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판단된 자녀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를 최초 제공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서면 거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해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제공에 대한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 자녀에게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동의를 요청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것을 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 재평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에게 재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가 재평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서면 거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재평가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평가 실시에 대한 귀하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30 일 이내, 또는 귀하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제안한 조치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달력일 기준 14 일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D. 전환기 서비스

전환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최초 평가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최초 배정 및 제공을 제외하고,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제안 사항을 귀하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귀하의 반대 의사를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해당 제안은 귀하의 동의없이도 발효됩니다.

또한,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환으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자녀의 교육 파일에 들어 있는 기존 자료를 검토하는 데는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학생에 대해 그 학부모로부터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테스트나 기타 평가를 실시하는 데도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의 반대 권리와 조정 회의에 대한 권리

귀하에게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제안 사항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4 일 이내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제안하는 일체 조치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제안에 반대하는 경우, 귀하에게는 조정 회의, 중재, 원할화 IEP 팀 회의 또는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는 사전 서면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제안 또는 거부에 대한 귀하의 반대 의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10 일 이내에 귀하에게 조정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미네소타 주법 제 125A.091 조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회의 중에 이루어진 모든 논의 내용은 기밀 사항이며, 적법 절차 심의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최종 조정 회의를 가진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최종 서비스 제공 제안 내용을 설명한 조정 회의록을 작성하여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회의록은 이후 이루어지는 일체의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또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양쪽 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 또는 원할화 IEP(개별 교육 프로그램) 팀의 도움을 받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적법 절차 심의(본 문서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관련 섹션 참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적법 절차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자녀에게 계속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기밀성과 개인 식별 정보

개인 식별 정보에는 학생의 이름, 해당 학생의 부모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름, 해당 학생 또는 가족의 주소, 개인 식별자(학생의 SSN, 학생 번호 또는 생체 인식 기록 등), 다른 간접적 식별자(학생의 생일, 출생 장소, 어머니의 결혼 전 성 등), 그 외에 단독으로 또는 결합되었을 때 특정 학생으로 연결되는 또는 연결될 수 있어서 해당 학교 커뮤니티 내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으로, 관련 상황에 대한 개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합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해당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건대 해당 교육 기록에 관련된 학생의 신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요청하는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과 MDE(미네소타 주 교육부)는 반드시 수집, 보관, 공개 및 파기하는 모든 개인 식별 데이터, 정보 및 기록의 기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IDEA(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장애인교육법)에 따라 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는 참여 기관의 담당자가 아닌 누군가에게, 또는 IDEA 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녀의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귀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를 공유하는 데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가 IDE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또는 주 교육부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귀하의 동의 또는 자격 충족 학생(18 세 이상)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징계 기록을 포함해, 자녀의 교육 기록은 자녀가 다른 학교 또는 기관, 또는 다른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소속 학교에 등록하거나 다니려는 경우, 귀하의 동의없이 해당 학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또는 고등 교육 기관의 담당자에게 인계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은 반드시 FERPA(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가족교육권리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른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동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4 C.F.R. 파트 99 를 참조하십시오.

디렉터리 정보

디렉터리 정보는 귀하의 동의없이 공유 가능합니다. 디렉터리 정보는 자녀의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 중 공개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개인정보 침해로 간주되지 않을 정보입니다.

디렉터리 정보에는 학생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출생일 및 장소, 전공 분야, 학점 수준, 등록 상태, 출석일, 공식 활동 및 스포츠 참여, 운동팀 팀원인 경우 체중 및 신장, 학위, 우등상, 수상 경력, 가장 최근에 다닌 교육 기관, 학생 ID 번호, 사용자 ID 또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액세스 또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한 개인 식별자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디렉터리 정보에는 연방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생의 SSN(사회보장번호)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액세스 또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학생 ID 번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에 관한 특정 또는 전체 데이터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허용할지 여부를 반드시 귀하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통지는 귀하 또는 자격 충족 학생에게 그러한 권리에 대해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 수준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일체의 수단을 통해 귀하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 정보를 디렉터리 정보로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는 공공 데이터로 간주되어 귀하의 동의없이 공유될 수 있습니다.

귀하(학부모를 의미)에 관한 정보는 개인 정보이지만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학생 데이터를 디렉터리 정보로 지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경우 디렉터리 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IEP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외부자 청구와 관련한 연례 서면 통보

처음으로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에 의료비를 청구하기 전, 그리고 매년,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하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자녀의 **IEP** 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미네소타 주 인적서비스부(**DHS**)와 공유해 자녀가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적용 대상인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Medican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처음으로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에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공개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예: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에 관한 기록 또는 정보), 공개 이유,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기관(즉, 인적서비스부) 등이 명시되어 있고, 건강 관련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귀하의(또는 귀하 자녀의) 공공 수당 또는 보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그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명시한 귀하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3.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의 **IEP** 에 포함되어 있는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에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4.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는 자녀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귀하가 반드시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또는 그 외 다른 보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비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본인 부담금 또는 공동 부담금의 납입 등 본인 부담 비용을 귀하가 부담하도록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귀하가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6.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Medical Assistance** 또는 **MinnesotaCare** 에 따른 자녀의 혜택이 이용 가능한 평생 보장 또는 그 외 다른 보험 대상 혜택을 감소시키는 경우, 공공 수당 또는 보험 프로그램으로 커버될 수 있고 자녀가 학교에 있는 시간 이외에 요구되는 서비스에 대해 가족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혜택 또는 보험 중단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누적 의료비 관련 지출로 인해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웨이버에 대한 자격 상실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IEP**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해 비용 상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일체의 제 3자와 공유하는 교육 기록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언제든지 인적서비스부(DHS)를 포함해, 제 3 자에게 자녀의 교육 기록을 공개하는 귀하의 동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중단할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제 3 자에게 IEP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는 목적으로 자녀의 교육 기록을 더이상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녀의 IEP 서비스는 변경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외부 교육 평가(IEE)

외부 교육 평가(IEE)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직원이 아니면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말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IEE 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 때 비용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부담합니다. 심의 담당관도 적법 절차 심의 진행 중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비용 부담으로 자녀에 대해 IEE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EE 요청이 이루어지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외부 검사관에 대한 선정 기준, 그리고 외부 교육 평가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가 IEE 를 요청하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지체 없이, 공공 경비로 IEE 가 제공되도록 하거나 해당 평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심의를 열고, 해당 심의 담당관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평가가 적절했다고 판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게는 여전히 외부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은 공공 경비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IEE 를 받게 되는 경우, IEP/IIIP(Individual Interagency Intervention Plan: 개별 기관간 개입 계획) 팀은 반드시 해당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자녀와 관련한 적법 절차 심의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교육 기록

교육 기록의 정의

연방법에서, 교육 기록은 특정 학생과 직접 연관되며 해당 교육부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을 의미합니다.

기록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 권한

귀하가 자녀의 교육 기록을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가 검토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러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에는 해당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녀에 관한 대부분 정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담당 교사가 순전히 자신의 수업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교육 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불필요한 지체 없이, IEP 와 관련한 일체의 회의 이전에, 또는 자녀에 관한 일체의 심의 또는 해결 세션 이전에 귀하가 해당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의 교육 기록을 검토하고자 하는 귀하의 요청에 대해 가능하면 즉시, 또는 즉시 따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 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제외)에 따라야 합니다.

기록 점검 및 검토에 대한 귀하의 권리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요청이 있을 시 자녀의 기록에 대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설명 또는 해석을 들을 권리
2. 귀하의 대리인이 귀하를 대신해 해당 기록을 점검 및 검토하도록 할 권리
3.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자녀의 교육 기록 사본을 귀하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
4. 주 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가 원하는 만큼 자주 자녀의 기록을 검토할 권리. 주 법규는 귀하가 개인 데이터를 살펴 보았고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 분쟁 또는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새로운 정보가 생성 또는 수집된 경우를 제외하고, 6 개월 동안 해당 데이터를 귀하에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 양도

자녀의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귀하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18 세가 되면 자녀에게 양도됩니다. 이러한 권리 양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귀하 및 자녀에게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학생에 관한 기록

어떤 교육 기록에 여러 학생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귀하에게는 귀하의 자녀에 관한 정보만 점검 및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자녀 외에 다른 학생들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는 교육 기록을 검토 및 점검하는 데 동의를 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에게는 그러한 동의에 대한 귀하의 요청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의 유형 및 위치 목록

귀하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과 교육부는 반드시 귀하에게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과 위치를 열거한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한 접근 기록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자녀의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모든 접근 요청, 그리고 모든 공개 내역에 대해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 기록에는 반드시 자녀의 교육 기록에 들어 있는 개인 식별 정보에 접근을 요청했거나 그러한 정보를 수령한 해당 개인의 이름, 접근이 허용된 날짜, 그리고 해당 공개의 목적, 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해당 개인의 합법적 관심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록 공개에 대한 동의

일반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권한이 없는 개인 또는 기관에 제공되기 전에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해당 정보를 수령하게 되는 해당 개인 또는 기관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에는 공개 대상 정보의 성격, 해당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목적, 그리고 정보 공개 허가에 대한 합당한 만료일이 포함됩니다. 요청을 받으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하가 동의를 하고 난 후에 공개 대상 기록의 사본 1 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진단 및 치료 정보를 포함해 자녀의 IEP/IIIP 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귀하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귀하의 동의서 없이 의료 보험사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기록 검색, 조회 및 복사 수수료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기록의 검색 또는 조회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귀하가 그러한 수수료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해당 교육 기록을 점검 및 검토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사본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의 수정

귀하가 자녀의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하거나,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합당한 기간 내에 해당 기록을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당 기록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하에게 그러한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심의의 결과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당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그 외에 자녀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귀하에게는 자녀의 교육 기록에 이의 제기 관련 정보와 나란히 귀하의 의견과 비동의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포함시키도록 할 권리가 있음을 귀하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교육 기록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의는 반드시 그러한 심의와 관련해 FERPA 에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기록의 양도

미네소타 주 법규에 따르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차터 스쿨 또는 비공립 학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정상 업무일 기준 10 일 이내에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새로 전학 가는 학교로, 징계 기록을 포함해 학생의 교육 기록을 양도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의 파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반드시 귀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 식별 정보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에서 자녀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적, 출석 기록, 출석 학급, 이수 학년, 이수 연도 등에 대한 영구 기록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파기란 정보에서 개인 식별자를 물리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해당 정보에서 개인 식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 교육 관련 기록 파기 요청을 따르기 위해 해당 학생의 기록을 반드시 물리적으로 파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의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적절하게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기 방법 선택권은 해당 학교 당국에 있습니다.

해당 기록에 대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점검 또는 검토 요청이 남아 있는 경우 그 교육 기록은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기록 파기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는 연방 기금 수령자는 해당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기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GEPA(General Education Provision Act: 종합교육제공법)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일부 기록들은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향후에 SSI 혜택 신청 등과 같은 기록 보관 목적을 위해 자녀에 관한 일부 특수 교육 기록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중재

중재는 분쟁 해결을 돕기 위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발적 절차입니다. 귀하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전화 651-582-8222 또는 1-866-466-7367 번으로 미네소타 주 교육부(MDE)의 특수 교육 대안적 분쟁 해결(Special Educ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프로그램에 무료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분쟁 해결 기법 전문 교육을 받은 중립적 제 3자가 담당합니다. 중재는 적법 절차 심의를 가질 귀하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중재자가 배정되려면 먼저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담당자가 모두 중재 시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중재 진행 중 언제든지 중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당 분쟁 전체 또는 일부를 해결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해 다른 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중재자는 그러한 해결 또는 합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양측이 모두 서명하고, 양측이 모두 해당 문서의 사본을 한 부씩 받도록 합니다. 해결 문서 또는 합의서에는 중재 중 이루어진 모든 논의 내용은 기밀 사항이며, 일체의 심의 또는 민사 소송 절차 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해결 또는 합의 내용은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양측에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주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중재 합의서 이행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이의 신청 제출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은 미네소타 주 교육부(MDE)에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MDE 에 제출하는 이의 신청은 다음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해당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서명해야 합니다.
2. 주 또는 연방 특수 교육 법규 또는 규칙 위반 혐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해당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해당 학생의 이름과 거주지 주소, 그리고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해당 학생의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포함해, 그 문제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해당 이의 신청을 제출하는 시점에서, 해당 당사자가 알고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8. 해당 이의 신청을 **MED** 에 제출하는 동시에 해당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에도 전달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반드시 아래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Compliance and Assistance
Due Process Supervisor
1500 West Highway 36
Roseville, MN 55113-4266
651.582.8689 전화
651.582.8725 팩스

이의 신청은 반드시 위반 혐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MDE** 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MDE** 는 60일 이내에 서면 형식의 결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으로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귀하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중재 참여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최종 이의 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에 따른 사실상 피해 당사자인 귀하(학부모)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최종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델 양식

MDE 는 특수 교육 또는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신청을 제출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양식은 **MDE** 홈페이지, **MDE > School Support(학교 지원) > Compliance and Assistance(준수 및 지원) > Due Process Forms(정식 절차 양식)**에 나와 있습니다.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

귀하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에는 양측 모두,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알게된 날 또는 알았어야 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공정한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는 학생의 평가, **IEP** 또는 교육 배정에 대한 개시 또는 변경, 또는 **FAPE** 제공을 제안 또는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에서는 자녀에 대한 식별, 평가, 교육 배정, 명시 결정(**manifestation determination**) 또는 적절한 무료 공교육의 제공 등과 관련한 일체 사안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적법 절차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적법 절차 심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반드시 귀하, 그리고 해당 적법 절차 이의 신청에서 혐의 제기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관련 **IEP** 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의의 목적은 귀하가 해당 적법 절차 이의 신청 내용과 해당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해당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의 근거가 되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해결 회의 개최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또는 중재에 합의한다는 내용으로 서면 합의하는 경우 해결 회의는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도 해결 회의는 반드시 개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적법 절차 이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해당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심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해결 회의 또는 중재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설득하지 못하고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를 포기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30 일 간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심의 담당관에게 귀하의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권리의 상실

참고: 제 8 순회항소법원에 의한 주 법규 해석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을 변경하고 새로 옮겨 가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자녀를 등록시키기 전에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이전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발생했던 일체의 특수 교육 관련 사안에 관한 적법 절차 심의를 가질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새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발생하는 특수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 절차 심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 개시 절차

해당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심의에 대한 서면 요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반드시 귀하에게 이러한 절차 상 안전 장치 통지서 사본 1 부와 심의에 대한 귀하의 권리 사본 1 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 당사자에게 해당 요청서 사본 1 부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대 당사자는 요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반드시 절차 상 안전 장치 통지서 사본 1 부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서면 요청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자녀의 이름
2. 자녀의 주소
3. 자녀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이름
4. 사실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포함해, 문제 사안(들)에 대한 서술
5. 요청 시점에, 귀하가 알고 있고 이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안

MDE 에는 자격을 갖춘 심의 담당관 명단이 있습니다. 심의에 대한 서면 요청서가 접수되면, MDE 는 바로 그 명단에서 심의를 실시할 심의 담당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은 심의에서 귀하의 권리 몇 가지를 열거한 것입니다. 열거된 권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귀하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모두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장애 학생의 문제와 관련해 전문 지식 또는 교육을 받은 변호사 및 개인을 동반하고 그 자문을 받을 권리

2.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직접 대면하고, 반대 심문을 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리
3. 평가 데이터와 그러한 평가를 근거로 한 권고 내용을 포함해, 심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업무일 기준 5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일체 증거가 심의에서 제출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
4. 심의 회의록 또는 확인된 사실 및 판결에 대한 전자적 기록 사본을 무료로 받을 권리

학부모로서 귀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심의 대상인 자녀를 심의에 참석시킬 권리
2. 심의를 일반에 공개할 권리
3. 심의의 기록 또는 회의록 및 심의 담당자의 사실 확인, 담당자가 내린 법적 결론 및 판결을 무료로 제공 받을 권리

심의 요청에 대한 대응

귀하가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전에 해당 심의 요청의 주제 사안에 관해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으로부터 사전 서면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해당 심의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심의 요청에서 제기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설명서를 귀하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문에는 반드시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들에 대한 설명, 그러한 옵션들이 거부된 이유,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제안 또는 거부된 조치에 근거로 사용한 평가 절차, 심사, 기록 또는 보고서 각각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제안 또는 거부 결정과 관련한 여러 요인들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해당 심의 요청이 주 법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 요청은 요청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요청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내용을 해당 심의 담당관에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의 담당관은 반드시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심의 요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심의 요청을 통해 귀하가 제기한 사안들에 대한 응답을 적은 서면 답변서를 귀하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심의 전 추가 증거의 공개

교육감(commissioner)이 심의 담당관을 임명한 날로부터 업무일 5일 이내에 심의 사전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 회의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 내 특정 장소에서 실제 대면 방식으로, 또는 전화 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업무일 기준으로 심의 개최 최소 5일 전에 귀하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해당 일까지 심의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녀가 완료한 모든 평가 내용, 그리고 그러한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권고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상대 당사자의 동의없이 심의에서 미공개 평가 내용 또는 권고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정문

주 정부 기관에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 일 간의 해결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달력일 기준으로 45 일 이내에 또는 적절하게 연장된 기한 내에 심의 결정문을 발표하여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기록에 포함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45 일 기간 이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귀하 및 귀하 자녀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 심의를 열어 구두로 양측 주장을 들어야 합니다. 귀하 자녀가 FAPE 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 담당관의 결정은 FAPE 에 직접 연관된 증거와 주장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심의 결정은 귀하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최종적인 것입니다. 사무 처리 상 오류 및 계산 상 오류를 제외하고, 심의 담당관에게는 결정문을 수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적법 절차 심의에 대한 별도의 요청

귀하에게는 이미 제출된 적법 절차 이의 신청과는 별도의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및 심의 데이터베이스

특수 교육 이의 신청 및 적법 절차 심의 최종 결정문은 MDE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MDE 는 Complaints, Hearings, and Letters Search Engine(이의 신청, 심의 및 서한 검색 엔진)이라는 이름의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 있는 결정문은 수정을 거쳐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삭제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MDE 웹사이트의 Compliance and Assistance(준수 및 지원) 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w20.education.state.mn.us/WebsiteContent/ComplianceSearch.jsp>.

민사 소송

귀하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심의 담당관이 확인한 사실 및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쪽이든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연방 지방 법원 또는 주 항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법원마다 다른 검토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 항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달력일 기준 6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연방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심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심의 또는 민사 소송 진행 중 배정

귀하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또는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자녀는 현재 배정되어 있는 교육 기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절대 학교로의 최초 입학을 거부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자리 유지(stay-put)” 규칙으로 불립니다.

“제자리 유지(stay-put)”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합니다.

1. 학생들은 특정 무기, 약물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수업일 기준 45 일 이하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현재 교육 기관에서 임시 대안적 교육 환경으로 옮기게 될 수 있습니다.

- 이후 이어지는 항소 진행 중 “제자리 유지(stay-put)” 상황 만큼 배정 상 변경이 적절하다는 데 있어 심의 담당관이 귀하의 견해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급행 심의

귀하(학부모)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다음 상황에 급행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정을 개시 또는 변경, 또는 자녀에 대한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FAPE**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려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제안에 대해 귀하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 자녀의 식별, 평가 또는 교육 배정을 개시 또는 변경, 또는 자녀에 대한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FAPE**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는 데 대한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거부에 대해 귀하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 귀하가 명시 결정(**manifestation determination**)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자녀의 현재 배정 상황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자녀 또는 다른 학생들에게 부상이 초래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위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신속한 적법 절차 심의를 위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급행 심의 진행 일정

급행 심의는 반드시 심의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20** 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은 심의가 열린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 발표해야 합니다. 해결 회의는 반드시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열려야 합니다. 단, 귀하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서면 형태로 해결 회의를 포기하거나 중재 절차를 사용하겠다고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급행 적법 절차 심의는 해당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양 당사자가 만족하도록 해당 사안이 해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의 신청의 기각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도 해결 회의 또는 중재에 대한 귀하의 참여를 설득하지 못하고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서면으로 해결 회의를 포기하는 데 합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30** 일 간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심의 담당관에게 귀하의 적법 절차 이의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에 의한 배정

심의 담당관이, 귀하의 자녀가 현재 배정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부상을 초래할 상당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 담당관은 귀하의 자녀를 최장 **45** 일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으로 옮기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항소할 권리

귀하 또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급행 적법 절차 심의에서 심의 담당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 대안 교육 배정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귀하의 자녀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45 일 기간 동안 자녀의 교육 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연방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또는 MDE 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학교 및 학교 구내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위험한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2.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또는 MDE 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학교, 학교 구내에 있거나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규제 약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종용하는 경우. 여기에는 주류나 담배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방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 또는 MDE 의 관할권 내에 있는 학교 및 학교 구내에 있는 동안, 또는 학교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 상해를 야기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귀하의 자녀를 옮기기로 결정하는 날(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학생 행동 규범의 위반으로 인해 장애 학생의 배정이 변경되는 것을 의미함),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귀하에게 해당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귀하에게 절차 상 안전 장치 통지서를 전달해야 합니다.

임시 대안 교육 환경과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는 IEP/IIIP 팀이 결정합니다. 임시적인 변경이지만, 자녀에게는 반드시 다음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1. 자녀가 다른 교육 환경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일반 교육 커리큘럼에 참여하고, 자녀의 IEP 에 정해져 있는 목표 달성을 향해 진도를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2. 문제 행동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 및 수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임시 대안 교육 상황에 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수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IEP/IIIP 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이 회의에서 팀은 반드시 자녀의 행동과 자녀의 장애와 그 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또 팀은 반드시 자녀의 행동과 관련한 평가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자녀의 IEP/IIIP 및 행동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팀은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장애에 의해 초래된 것인지, 자신의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또는 자녀의 행동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IEP 를 시행하지 못한 데 대한 직접적인 결과로 초래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의 관련 변호사 비용

적법 절차 심의에서 귀하가 승소하는 경우 귀하는 변호사 비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해당 지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을 바탕으로 계산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서 귀하가 불합리하게 합의나 결정을 지체시켰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보상액을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승소하고, 법원이 심의에 대한 귀하의 요청이 일체의 부적절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귀하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정학 및 퇴학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에서 퇴학 또는 정학 조치를 받기 전에, 먼저 명시 결정(manifestation determination)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이 자신의 장애와 관련된 것인 경우 자녀는 퇴학될 수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 그 학생의 장애의 명시가 아닌 문제 행동으로 인해 학생공정퇴학법(Pupil Fair Dismissal Act), 미네소타 주법(Minnesota Statutes) 제 121A.41-56 조에 따라 정학 또는 퇴학 당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정학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정학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해서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징계적 이동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자신의 현재 교육 배정 상황에서 내보내지는 경우, 이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배정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1. 해당 이동 기간이 수업일 기준으로 연속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녀가 다음에 해당되는 이유로 일정한 패턴을 성립하는 일련의 이동 대상이 된 경우:
 - a. 그러한 일련의 이동 일수의 총 합계가 한 해에 수업일 기준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 b. 자녀의 행동이 일련의 이동으로 이어졌던 이전의 사고에서 보였던 행동과 상당히 유사한 경우
 - c. 각 이동별 기간 같은 추가적 요인들 중, 자녀가 내보내졌던 총 시간의 합계, 그리고 이동 간 간격

여러 차례에 걸친 이동의 패턴이 배정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결정합니다. 그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적법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수혜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학생

자녀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수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지 않았고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자녀가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징계 대상 위반 행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경우, 자녀는 본 통지서에 기술되어 있는 보호 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를 초래한 문제 행동 발생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자녀가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귀하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감독직 또는 행정직 담당자에게, 또는 자녀의 담당 교사에게 서면으로, 자녀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는 경우
2. 귀하가 IDEA 파트 B 에 따라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혜 자격 관련 평가를 요청한 적이 있는 경우
3. 자녀의 담당 교사 또는 다른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 담당자가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특수 교육 담당관(디렉터) 또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다른 감독직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자녀가 보이는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인 우려를 표시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의 인지 예외 상황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귀하가 예전에 자녀에 대한 평가 동의를 거부한 적이 있거나, 특수 교육 서비스를 거부한 적이 있는 경우
2. 자녀가 이미 IDEA 파트 B 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장애 학생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경우

인지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자녀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자녀가 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른 경우, 자녀는 장애가 없는 학생으로 유사한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징계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징계 조치 대상인 기간 중에 자녀에 대한 평가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평가는 신속한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자녀는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결정하는 교육 배정에 남아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정학 또는 퇴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정학 제 6 일에 정규 특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안 교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치안 및 사법 당국에 대한 의뢰 및 그에 의한 조치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적절한 당국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 치안 및 사법 당국은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법에 따른 사법 당국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의 전달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이 장애 학생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반드시 해당 학생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들을 해당 범죄의 신고를 접수하는 해당 관서에 전달해 고려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학교의 교육당국은 FERPA 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녀의 특수 교육 및 징계 기록 사본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립 학교 배정

IDEA 는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자녀에게 FAPE 를 제공했는데 귀하가 자녀를 사립 학교에 보내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은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해 사립 학교에서 자녀를 교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자녀를 공공 경비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귀하의 의도를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리고 심의 담당관이 자녀가 사립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신속하게 FAPE 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 학교 입학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립 학교를 다니는 데 따른 수업료 비용을 상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반드시 자녀를 공립 학교에서 전학시키기 전에 가장 최근에 열린 IEP/IIIP 회의에서 자녀를 공공 경비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의도를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전달하거나, 업무일 기준 최소 10 일 전에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할 때, 반드시 자신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제안한 IEP/IIIP 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심의 담당관이나 법원이,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사립 학교 입학 결정이 적절했다고 결정하는 경우, 귀하는 사립 학교 입학에 따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공공 경비로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학교에 전달하지 않거나,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이 자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의도를 귀하에게 통지한 후, 자녀를 사립 학교에 입학시키기 전에 자녀가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귀하에 의한 합당하지 않은 지체는 사립 학교 입학에 대한 비용 상환액의 축소 또는 상환 거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 담당관은 다음의 경우 비용 상환액을 축소하거나 상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당 학군의 교육당국에서 귀하가 본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한 경우, 귀하가 본 섹션 윗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귀하 자신의 의무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상기 요건을 따를 경우 자녀에게 신체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영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지 못한 경우, 또는 상기 요건을 따를 경우 자녀에게 심각한 정서적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